

<붙임 12>

소송 당사자 해당사실 보고서

※ 시행령 제371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의 원고로 소송(가처분 포함) 등을 제기·신청하거나 당해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소송(가처분 포함) 등이 제기·신청된 사실이 확인된 때 작성한다.

1. 사건의 명칭 : 소액단독
2. 소송 당사자(원고 및 피고) : 원고 *** / 피고 주식회사 이루자산운용
3. 제기·신청일자 및 청구내용 : 2025.04.16. (당사 우편 접수일자 2025.04.22.)
연봉 관련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
4. 관할법원 : 서울동부지방법원

※ 소송 발생 원인

1. 원고가 본 소송 청구내용으로,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당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없어, 행정종결(형사)로 회신받았으나, ***은(는) 민사로 소송을 제기함
 - 1) 노동청 (2024.11.26. 민원제기 => 2025.03.18. 행정종결(법위반 없음))
 - 2) 금감원 (2024.12.30. 민원제기에 따른 당사 소명 자료 제출)
2. 소송대리인(변호사) 선임하여 대응 예정